



노동부 고시 제97-27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를 보면 경고표시 부착시 해당하는 유해그림을 모두 제시하되 3가지 이상의 유해그림에 해당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로 최대 3가지 그림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3개의 유해그림 선정을 위하여 대산화학물질의 16개 분류별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시 부착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97-27호) 제12조에서 당해 화학물질이 3가지 이상의 유해그림에 해당할 경우 최대 3가지 그림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해그림별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아니 합니다. 다만, 동 제도의 제정 취지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0억정도(부가세 포함)의 PLANT TURNKEY 공사시 외국에서 자재를 사서 들어오는 비용이 약40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내 구입 자재비는 20억원정도로 실제 공사비 약 10억원정도 입니다. 이는 물론 현장에서 직접 공사비인데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외자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만약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책정 대상액만해도 1억원이 넘는데 그만큼 공사가 많지 않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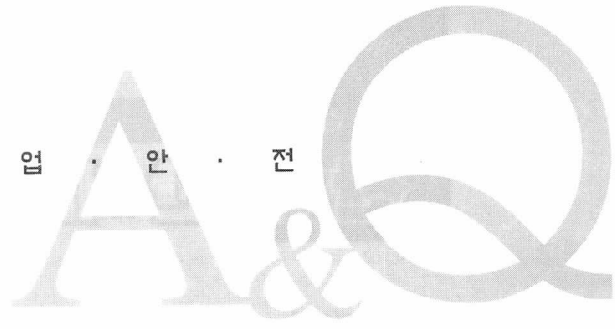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플랜트 건설 TURNKEY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자재비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검사실 등에서 환자 혈액, 소변, 인체조직 검사를 위해 유기용제나 특정화학물질을 소량 간헐적으로 후드나 크린벤치내에서만 사용할 경우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연구업무(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제 6호 카목)와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동 규칙 제186조)에 대하여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마목 및 바목)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실이 상기에 해당될 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건설현장의 작업발판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유통되고 있는 작업발판(안전발판)만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2, 단판비계, 틀비계에 작업발판으로 거푸집(유리폼), 합판 등을 사용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및 노동부고시 제92-49호 가설공사표준 안전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사항인지요?

3, P,S,P(아나방)의 구멍에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단(근로자의 발이 닿는곳)에 보온 덮개를 덮거나, 밑면에 낙하물방지망을 치는 등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한 후 2.의 질의내용중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P,S,P를 사용한다면 위법사항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제1항 제17호에는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귀 질에서 말하는 유료폼, P.S.P(아나방) 등은 작업대(작업발판)로 사용할 수 없으나 당해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검정 시행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P.S.P 등을 작업대(작업발판)로 사용할 경우 '97. 1. 1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적절한 보강조치를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중 자체공사에 공사금액의 70%에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할 때, 다음의 항목등이 그 대상액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민원처리비
2. 하자보수충당금
3. 퇴직급여충당금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

조 제3항에 의하면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경우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 구성 원가상의 제비목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항목중 노무비 항목에 포함이 되나, 위 준칙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비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원처리비, 하자보수충당금 등의 비용이 당해 공사의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여부,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자의 글을 찾습니다

『안전기술』 편집부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연구논단, 수기와 수필 등 다양한 독자의 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안전기술』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32)667-4191 ▶ 팩스 : (032)656-6261 ▶ e-mail : kisa90@chollian.net

▶ 주소 : 422-04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2-7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담당자 앞